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405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및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 대여신청시 구비서류에서 보증인의 인감증명 요구 항목 삭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추가

3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

(☎02-3396-5454, FAX: 02-3396-8754, E-mail: bmj1101@junggu.seoul.kr)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메일 등 가능

붙임 1.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”를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대여신청시 구비서류)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보증인의 <u>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</u>(조례 제12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)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8조(대여신청시 구비서류) --- ----- ----- 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본인서명사실확인서</u> <u>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</u>---</p> <p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